[첨부 2.]

합병 및 분할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본 안건(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당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i)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특별(명부)계좌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당사에 •일반(실질)계좌 주주(증권회사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전(2020년 9월 24일)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 청구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특별(명부)계좌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2020년 10월 19일)까지 당사에 제출하고 • 일반(실질)계좌 주주는 매수청구 종료일 2영업일전(2020년 10월 1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는 1주당 62,144원 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20년 10월 29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특별(명부) 계좌 주주는 우리 회사 자금 담당부서이며 •일반(실질)계좌 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2)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 (3) 일반(실질)계좌 주주의 경우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담당 거래증권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주권 포함) 제출 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전북 군산시 임해로 33	33 2층 영업경영	지원팀
전화번호	063)460-7217	팩스번호	063)471-9166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와 ㈜ 이테크건설 간의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2020년월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연락전화번호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절취선			
주식매수 청구서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던 바, 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는 바 입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00은행 계좌번호:			
2020년월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연락전화번호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귀중		